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공고 정정 공고 (세종 6-3생활권 H3블록, 빗돌마을 6단지)

▣ 2020년 1월 22일자 '청약Home'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H3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구분		기존	정정
H3블록	112.8273P 동별 안내	604동 6호	604동 7호
H2, H3블록 (공통)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해당 시도 거주기간(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표 하단 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표 하단 위치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세종 6-3생활권 H3블록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sejongkhapt.com) 운영 및 방문예약제를 통한 적정 인원의 내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약자 본인 외 동반 입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는 당첨자만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정당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분양사무소)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분양사무소)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 정당계약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홈페이지(http://www.sejongkhapt.com)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예약 접수 방식 변경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시 별도 통보 예정)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오니,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044-862-1567)로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분양사무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및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VI. 계약체결 관련」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내방시 : 당첨자 1인만 내방 가능(동행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시 포함)

2.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 입장 전 마스크 및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분양사무소)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분양사무소)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44-862-1567)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방 가능 일자 및 예약방법(※ 사전예약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H3블록 통합운영으로 별도 예약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 분	사전 예약 일시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내방 가능 일시
일 정	1월 23일(토) ~ 1월 30일(토)	1월 27일(수) ~ 1월 31일(일)
방 법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시간대별 30명 이하 내방 예약 가능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며 유선상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시간대별 30명 이하 예약만 가능합니다. ■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정책 등에 따라 기존 예약을 하셨더라도 취소 및 내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분양사무소)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 안내**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예약	자격검증 서류제출 내방 가능 일시
일 정	2월 9일(화) ~ 2월 19일(금)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방 법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당첨자만 예약 가능)	시간대별 40명 이하 내방 예약 가능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며 유선상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시간대별 40명 이하 예약만 가능합니다. ■ 조기에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정책 등에 따라 기존 예약을 하셨더라도 취소 및 내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간대별 내방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및 견본주택(분양사무소) 관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시간 경과 후 내방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동일 유형의 당첨자라도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서류제출 시간 및 상담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사전서류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당첨자 사전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제출 기간 내 내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사전서류제출 및 추첨시 대상 세대를 고려하여 앞순번 일부 세대만 우선 접수 및 추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세종 6-3생활권 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분양 상담전화(☎ 044-862-156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많은 상담전화와 청약 신청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1.01.01. 개정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1.2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 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전국)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②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0.01.2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및 전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2019.11.0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세대구성원 중 혼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세대수의 40%를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오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당첨주소 및 계약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제2조 제4호에 따른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 제2의3호.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1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자로서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해당제한 대상 주택 :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 해당제한 기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사실 등)초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포함)은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금지되며, 1주택 보유세대는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登記 이후 기 보유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선정 업무는 **2020.07.01. 기준 한국주택협회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되었으며,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2021.01.12.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세대수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50%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1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 ① 계약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
 - ② 입주 이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 함
 -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
- ※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됨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해당제한 :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제26조2의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47조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수의 500%(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jongkh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분양주택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중복 청약접수 및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접수 시행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 중복 당첨자 처리기준(국토교통부 시행 주택기금과-3502)에 의거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또한 특별공급을 신청한 자의 세대구성원(세대주인 배우자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세대주))이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갖추어 공급유형을 달리한 신청(신청자(특별공급)+배우자(일반공급))으로 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하나 일반공급 당첨(배우자)은 재당첨제한으로 부적격 처리됨. 또한,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 (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또는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정하는 분양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서 배제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규제(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개정2020.9.22.>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1.02.09.)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4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며(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특별공급 주택은 5년간(2026.02.09.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101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제65조 관련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이전기관)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 제출 및 자격검증 기간	계약체결
일 정	2월 1일(월)		2월 2일(화)	2월 3일(수)	2월 9일(화)	2월 15일(월) ~ 2월 20일(토)	2월 22일(월) ~ 2월 26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분양사무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분양사무소) ☎ 044-862-15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분양사무소) ☎ 044-862-1567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대행은행 창구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2327호(2021.01.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5층 6개동 총 5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고 예정임)

[특별공급 415세대(이전기관종사자 등 232세대, 일반[기관추천] 31세대, 다자녀가구 34세대, 신혼부부 61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4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지분 (%)	타입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해당동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	
					주택공급면적			그밖의 공용면적						합계	이전기관 종사자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민영 주택	2021000026	01	59.7180A	59A	59.7180	21.5109	81.2289	4.6809	45.2400	131.1498	35.6296	114	114	46	7	6	14	2	10	85	29	601, 602, 603, 605, 606동	19	
		02	59.5231C	59C	59.5231	21.6793	81.2024	4.6656	45.0923	130.9603	35.5133	13	13	5	1	1	2	-	1	10	3	601, 602동	2	
		03	59.8304D	59D2	59.8304	21.0822	80.9126	4.6897	45.3251	130.9274	35.6966	10	10	4	1	1	1	-	1	8	2	601동	5	
		04	59.9515E	59E	59.9515	21.3889	81.3404	4.6992	45.4169	131.4565	35.7689	18	18	7	1	1	2	-	2	13	5	601동	9	
		05	59.6804F	59F	59.6804	21.1467	80.8271	4.6780	45.2115	130.7166	35.6071	15	15	6	1	1	2	-	1	11	4	604동	5	
		06	59.8585H	59H	59.8585	23.1817	83.0402	4.6920	45.3464	133.0786	35.7134	7	7	3	-	-	1	-	1	5	2	602동	1	
		07	59.5657I	59I	59.5657	22.2040	81.7697	4.6690	45.1246	131.5633	35.5387	18	18	7	1	1	2	-	2	13	5	601동	1	
		08	59.1971J	59J	59.1971	21.5627	80.7598	4.6401	44.8454	130.2453	35.3188	18	18	7	1	1	2	-	2	13	5	601동	1	
		09	59.8718L	59L	59.8718	22.1763	82.0481	4.6930	45.3565	132.0976	35.7213	7	7	3	-	-	1	-	1	5	2	603동	1	
		10	84.0000A	84A1	84.9837	32.5739	117.5576	6.6614	64.3803	188.5993	50.7039	34	52	21	3	3	6	2	5	40	12	605동	1	
				84A2	84.8875	31.4395	116.3270	6.6538	64.3074	187.2882	50.6465	18												606동
		11	84.4858B	84B1	84.4858	31.4065	115.8923	6.6224	64.0031	186.5178	50.4068	65	65	26	4	4	8	2	6	50	15	604동	2	
		12	84.8445C	84C1	84.8445	31.0569	115.9014	6.6504	64.2748	186.8266	50.6208	27	27	11	2	2	3	-	2	20	7	605동	-	
		13	84.9196D	84D1	84.9196	31.7862	116.7058	6.6564	64.3317	187.6939	50.6656	34	34	14	2	2	4	1	3	26	8	605동	1	
		14	84.8512F	84F	84.8512	31.0227	115.8739	6.6510	64.2799	186.8048	50.6248	4	4	2	-	-	-	-	-	2	2	606동	1	
		15	84.7973G	84G	84.7973	32.2215	117.0188	6.6468	64.2391	187.9047	50.5927	6	6	2	-	-	1	-	1	4	2	605동	1	
		16	84.6564J	84J1	84.6564	31.6884	116.3448	6.6358	64.1323	187.1129	50.5086	14	33	13	2	2	4	2	3	26	7	602동	-	
				84J2	84.6564	31.6884	116.3448	6.6358	64.1323	187.1129	50.5086	13												-
				84J3	84.6564	31.6884	116.3448	6.6358	64.1323	187.1129	50.5086	6												1
		17	84.2128M	84M	84.2128	30.2463	114.4591	6.6010	63.7963	184.8564	50.2439	5	5	2	-	-	1	-	-	3	2	606동	1	
		18	84.8257P	84P	84.8257	30.6089	115.4346	6.6490	64.2606	186.3442	50.6096	12	12	5	1	1	1	-	1	9	3	601동	-	
		19	84.7851T	84T	84.7851	32.9488	117.7339	6.6458	64.2298	188.6095	50.5854	26	26	10	2	2	3	-	2	19	7	602동	-	
		20	84.7172U	84U	84.7172	30.7620	115.4792	6.6405	64.1784	186.2981	50.5449	14	14	6	1	1	2	-	1	11	3	606동	-	
		21	84.5053V	84V	84.5053	29.8194	114.3247	6.6239	64.0179	184.9665	50.4185	12	12	5	1	1	1	-	1	9	3	606동	-	
		22	90.6340D	90D	90.6340	33.1516	123.7856	7.1043	68.6607	199.5506	54.0750	5	5	2	-	-	-	-	-	2	3	601동	1	
		23	112.9028A	112A	112.9028	40.4702	153.3730	8.8498	85.5307	247.7535	67.3613	25	25	10	-	2	-	-	-	12	13	604동	-	
24	112.4722B	112B1	112.4722	42.1203	154.5925	8.8161	85.2045	248.6131	67.1044	27	33	13	-	2	-	2	-	17	16	602동	1			
		112B2	112.4722	42.1203	154.5925	8.8161	85.2045	248.6131	67.1044	6												-		
25	112.3705C	112C	112.3705	40.1612	152.5317	8.8081	85.1275	246.4673	67.0437	6	6	2	-	-	-	-	-	2	4	604동	1			
26	112.8273P	112P	112.8273	41.2100	154.0373	8.8439	85.4735	248.3547	67.3162	1	1	-	-	-	-	-	-	-	1	604동	-			

※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공급 세대수 범위 내에서 평형별 적의 조정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937대가 설치되며 공동주택 807대, 오피스텔 92대, 근린생활시설 38대가 설치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4층	1	139,785,897	287,376,457	28,737,646	455,900,000	91,18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45,590,000	91,180,000
				5~7층	3	139,785,897	296,012,821	29,601,282	465,400,000	93,08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93,080,000
112.9028A	112A	112.9028	604동 6호	9층이상	25	174,131,479	365,425,928	36,542,593	576,100,000	115,220,000	57,610,000	57,610,000	57,610,000	57,610,000	57,610,000	115,220,000
112.4722B	112B1	112.4722	602동 1호	2층	1	173,467,383	338,302,379	33,830,238	545,600,000	109,12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109,120,000
				3층	1	173,467,383	349,029,652	34,902,965	557,400,000	111,48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111,480,000
				4층	1	173,467,383	359,847,834	35,984,783	569,300,000	113,86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56,930,000	113,860,000
				5~7층	3	173,467,383	370,575,106	37,057,511	581,100,000	116,22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58,110,000	116,220,000
				8~18층	11	173,467,383	389,393,288	38,939,329	601,800,000	120,36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120,360,000
				25~34층	10	173,467,383	389,393,288	38,939,329	601,800,000	120,36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120,360,000
	112B2	112.4722			19~24층	6	173,467,383	389,393,288	38,939,329	601,800,000	120,36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60,180,000	120,360,000
112.3705C	112C	112.3705	604동 6호	2층	1	173,310,471	321,626,845	32,162,684	527,100,000	105,42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52,710,000	105,420,000
				3층	1	173,310,471	331,990,481	33,199,048	538,500,000	107,700,000	53,850,000	53,850,000	53,850,000	53,850,000	53,850,000	107,700,000
				4층	1	173,310,471	342,445,026	34,244,503	550,000,000	110,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10,000,000
				5~7층	3	173,310,471	352,899,572	35,289,957	561,500,000	112,30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56,150,000	112,300,000
112.8273P	112P	112.8273	604동 7호	34층	1	174,014,894	494,895,551	49,489,555	718,400,000	143,68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71,840,000	143,680,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주택형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7514A	59.5169C	59.8304D	59.9531E	59.6804F	59.8585H	59.5657I	59.1971J	59.8718L	84.0000A	84.4858B	84.8445C	84.9196D
약식표기(타입)	59A	59C	59D2	59E	59F	59H	59I	59J	59L	84A1,84A2	84B1	84C1	84D1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8512F	84.7973G	84.6564J	84.2128M	84.8257P	84.7801T	84.7172U	84.5053V	90.6340D	112.9028A	112.4722B	112.3705C	112.8273P
약식표기(타입)	84F	84G	84J1,84J2,84J3	84M	84P	84T	84U	84V	90D	112A	112B1,112B2	112C	112P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		59A	59C	59D	59E	59F	59H	59I	59J	59L	84A	84B	84C	84D	84F	84G	84J	84M	84P	84T	84U	84V	90D	112A	112B	112C	112P	
이전기관 종사자 등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23	3	2	4	3	2	4	4	2	11	13	6	7	1	1	7	1	3	5	3	3	1	5	7	1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1주택처분서약자)	23	2	2	3	3	1	3	3	1	10	13	5	7	1	1	6	1	2	5	3	2	1	5	6	1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민	-	-	1	-	-	-	-	-	-	-	1	-	-	-	-	-	-	-	-	-	-	-	-	-	-	-	
	장애인	3	-	-	-	1	-	-	-	-	1	1	-	1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1	-	-	1	-	-	-	-	-	1	1	-	-	-	-	1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1	-	-	-	-	-	-	1	-	-	1	-	-	-	-	-	-	-	-	-	1	-	-	-	-	-	
	입주기업 종사자	1	-	-	-	-	-	-	-	-	1	-	-	1	-	-	1	-	-	-	-	-	-	-	-	-	-	
	북한이탈주민	1	-	-	-	-	-	-	-	-	-	-	-	-	-	-	-	-	1	-	-	-	-	-	-	-	-	
	10년이상 복무군인	-	-	-	-	-	-	-	1	-	-	-	-	1	-	-	-	-	-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	-	-	-	-	-	-	-	-	-	-	-	-	-	-	-	1	-	-	-	-	-
	납북피해자	-	-	-	-	-	-	-	-	-	-	-	-	1	-	-	-	-	-	-	-	-	-	-	-	-	-	-
	우수선수	-	-	-	-	-	-	-	-	-	-	-	-	-	-	-	-	-	-	-	1	-	-	-	-	-	-	-
	체육유공자	-	-	-	-	-	-	-	-	-	-	-	-	-	-	-	-	-	-	-	1	-	-	-	-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지역(50%)	3	1	1	1	1	-	1	1		2	2	1	1	-	-	1	-	1	1	1	1	-	1	1	-	-	
	기타지역(50%)	3	-	-	-	-	-	-	-	-	1	2	1	1	-	-	1	-	-	1	-	-	-	-	1	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5%)	11	2	1	2	2	1	2	2	1	5	6	2	3	-	1	3	1	1	2	2	1	-	-	-	-	-	
	일반공급(25%)	3	-	-	-	-	-	-	-	-	1	2	1	1	-	-	1	-	-	1	-	-	-	-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해당지역(50%)	5	1	1	1	1	1	1	1	1	3	3	1	2	-	1	2	-	1	1	1	1	-	-	-	-	-	
	기타지역(50%)	5	-	-	1	-	-	1	1	-	2	3	1	1	-	-	1	-	-	1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지역(50%)	1	-	-	-	-	-	-	-	-	1	1	-	1	-	-	1	-	-	-	-	-	-	-	1	-	-	
	기타지역(50%)	1	-	-	-	-	-	-	-	-	1	1	-	-	-	-	1	-	-	-	-	-	-	-	1	-	-	
합 계		85	10	8	13	11	5	13	13	5	40	50	20	26	2	4	26	3	9	19	11	9	2	12	17	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및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단, 일반공급하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세종특별자치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로 1세대가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1주택 보유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 분에 한해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자에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시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1.22.) 및 계약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청약홈에서 신청할 때 해당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타기관 선택시 부적격처리될 수 있음) ※ 청약주택의 입주일(2024년 01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한번의 특별공급 자격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①세종특별자치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②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와 ③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 ④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1항)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으며, 지정계약기간에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도 특별공급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3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비율은 전체 공급세대수의 40%를 우선 배정함.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은 특별공급 청약일 2일전까지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청장에게 제출한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에 없는 자는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2020.12.07.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변경되었음. 2021.01.12.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세대수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50%를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1주택자에게 공급함. ※ 단,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시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 ② 입주 이전까지 기존 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 함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 ※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됨 2020.12.01.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예정지역 내 신설되는 학교(유치원·초·중·고)의 교원 및 종사자 등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함 ※ 단, 기존에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당초 지정된 종료시점까지 특별공급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하시기 바람.(방문접수 불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 접속(www.applyhome.co.kr) → 메인화면의 청약신청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사업명 선택 → 이전기관 선택 → 주택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 → 청약신청 내역 확인(전자서명) → 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 신청 내역확인 → 청약 신청완료 신청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시간은 08: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드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추천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86 1157 1189 1460"> <thead> <tr> <th>추천기관</th> <th>청약통장 구비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철거주택소유자(LH세종특별본부) 장애인(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국가유공자(충남동부보훈지청)</td> <td>청약통장 필요없음</td> </tr> <tr> <td>장기복무 제대군인(충남동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입주기업종사자(세종특별자치시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td> <td>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td> </tr> </tbody> </table>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철거주택소유자(LH세종특별본부) 장애인(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국가유공자(충남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충남동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입주기업종사자(세종특별자치시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건본주택(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형은 특별공급 신청일 당일 기관별 대상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함(장애인의 경우 각 기관의 우선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주택형을 선정하며,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철거주택소유자(LH세종특별본부) 장애인(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시청, 충남도청) 국가유공자(충남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충남동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입주기업종사자(세종특별자치시청)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납북피해자(통일부) 우수선수(대한체육회) 체육유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 (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 상이 및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임신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③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 포함)를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00%초과~130%이하	5,554,984원 ~ 7,221,478원	6,226,343원 ~ 8,094,245원	6,938,355원 ~ 9,019,860원	7,594,084원 ~ 9,872,308원	8,249,813원 ~ 10,724,75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120%초과~140%이하	6,665,981원 ~ 7,776,976원	7,471,611원 ~ 8,716,879원	8,326,026원 ~ 9,713,696원	9,112,901원 ~ 10,631,716원	9,899,775원 ~ 11,549,737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씩 완화 적용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30% 이하인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 거주자(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배분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9,872,308원	10,724,756원	11,577,20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130%}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인 자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 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p>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④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p>	<p>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	---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 방법
<p>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이전기관,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외)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포함)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택형별로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③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공급일정은 별도 통보) • 예비입주자 선정(순번 포함)은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처리 사항을 준용합니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며, 건본주택(분양사무소)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등을 전산 검색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정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수도권 : 1년

-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③ ①,②에 해당하는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외)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p>청약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이 설정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해당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멸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등의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해당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 해당제한 대상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본양주택 당첨여부 및 해당제한기간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한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청약신청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 이하 : 가점제 100% • 84㎡ 초과 :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됨 	1. 해당지역 : 세종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①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② 기타지역(전국) 거주자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거주지역별 [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점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호]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 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선정 -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div>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은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최하층의 주택 배정 신청자는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와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 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전검수(서류접수) 기간에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자료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이 취소된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2021.02.0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 PC 또는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1.02.01.(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건분주택(분양사무소)] : 10:00~14:00)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 PC 또는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건분주택(분양사무소)
일반공급	1순위	2021.02.02.(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 PC 또는 모바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02.03.(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분주택(분양사무소)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일반공급 포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건본주택(분양사무소)비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확인서	본인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		신분증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 (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 신청한 자는 필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거주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제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 (2020.01.22.)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로 신청한 자는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주택공급 신청서 제출 서류 명확화"에 따라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제출 명확화 -본인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 : 출생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로 지정하여 발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본인	동·호수 발표일(2021.02.09.)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 등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6>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상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만 30세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도장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대리인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사업자 직인 날인 및 원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직인 미비 및 팩스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 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관리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2020.01.22~2021.01.22)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음,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청약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 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1.22.)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준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등,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2.09.(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 청약 Home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2.15.(월)~2021.02.20.(토) · 장소: 건본주택(분양사무소_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02.22(월)~02.26(금) (10:00~16:00) · 장소 - 건본주택(분양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람, 미제출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시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또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세대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세대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세대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2.09.(화) ~ 2021.02.18.(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2.0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계약체결 관련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 고
2021.02.22.(월) ~ 2021.02.26.(금) 5일간, 10:00 ~ 16:00	건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044-862-1567	일정 및 시간의 변동 시 별도 공지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미제출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문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주택의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관련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계약시구비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표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자금조달 계획서(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인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같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참조)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일임/변동임/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세대당 소유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소수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로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6-401-534208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1.22.(월) ~ 2021.01.22.(토))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건보주택(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중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보주택(분양사무소)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정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에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자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부과가 적용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길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열쇠불출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가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방,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민동아리실, 재활용나눔센터, 신혼배움터, 평생교육센터, 오락교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스카이라운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주민공동시설 내 집기류, 가구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됨)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공 급 가 격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금(80%)
주택형(m ²)	타 입		계약시	(2021.07.12)	입주지정일
59.7180A	59A	5,830,000	583,000	583,000	4,664,000
59.5231C	59C	5,160,000	516,000	516,000	4,128,000
59.8304D	59D2	4,910,000	491,000	491,000	3,928,000
59.9515E	59E	2,480,000	248,000	248,000	1,984,000
59.6804F	59F	2,490,000	249,000	249,000	1,992,000
59.8585H	59H	1,660,000	166,000	166,000	1,328,000
59.5657I	59I	3,660,000	366,000	366,000	2,928,000
59.1971J	59J	5,340,000	534,000	534,000	4,272,000
59.8718L	59L	4,320,000	432,000	432,000	3,456,000
84.0000A	84A1	9,830,000	983,000	983,000	7,864,000
	84A2	10,220,000	1,022,000	1,022,000	8,176,000
84.4858B	84B1	6,020,000	602,000	602,000	4,816,000
84.8445C	84C1	6,780,000	678,000	678,000	5,424,000
84.9196D	84D1	6,090,000	609,000	609,000	4,872,000
84.8512F	84F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84.7973G	84G	3,690,000	369,000	369,000	2,952,000
84.6564J	84J1	6,650,000	665,000	665,000	5,320,000
	84J2	6,530,000	653,000	653,000	5,224,000
	84J3	5,760,000	576,000	576,000	4,608,000
84.2128M	84M	4,520,000	452,000	452,000	3,616,000
84.8257P	84P	9,590,000	959,000	959,000	7,672,000
84.7801T	84T	7,530,000	753,000	753,000	6,024,000
84.7172U	84U	6,190,000	619,000	619,000	4,952,000
84.5053V	84V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90.6340D	90D	7,930,000	793,000	793,000	6,344,000
112.9028A	112A	10,620,000	1,062,000	1,062,000	8,496,000
112.4722B	112B1	10,690,000	1,069,000	1,069,000	8,552,000
	112B2	10,630,000	1,063,000	1,063,000	8,504,000
112.3705C	112C	7,150,000	715,000	715,000	5,720,000
112.8273P	112P	15,280,000	1,528,000	1,528,000	12,224,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실(실외기실)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품목, 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유상옵션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 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 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VR 동영상은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샷시는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창호는 같은 타입이라도 세대 위치에 따라 외벽 마감재 및 창호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면 CG와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사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여부에 상관없이 내부창호는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되나, 외부창호의 경우 확장여부, 외부입면 등에 따라 설치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대피공간에는 방화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등기구 및 램프 개수 등)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6-701-534209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발코니 확장 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2021.02.22.(월) ~ 2021.02.26.(금)]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유상옵션 입금계좌, 에어컨 입금계좌 등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에 준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타입	설치 위치	설치개소	설치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금(80%)
					계약시	(2021.07.12.)	입주지정일
59형	59A, 59C, 59D2, 59E, 59F, 59H, 59I, 59J, 59L	거실+침실1	2	3,190,000	319,000	319,000	2,552,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84형	84A1, 84A2, 84B1, 84C1, 84D1, 84F, 84G, 84J1, 84J2, 84J3, 84M, 84P, 84T, 84U, 84V	거실+침실1	3	4,620,000	462,000	462,000	3,696,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90형	90D	거실+침실1	3	4,510,000	451,000	451,000	3,608,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	6,820,000	682,000	682,000	5,456,000
112형	112A, 112B1, 112B2, 112C, 112P	거실+침실1	3	5,280,000	528,000	528,000	4,224,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또는 알파공간)	6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 상기 천장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실내기는 주방 부하 포함 용량이며, 84타입 이상은 거실에 실내기 두 대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후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됨. (알파공간 제외)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해당실의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알파공간등 문이 설치되지 않는 공간은 실내기가 배치되지 않음.

■ 가구 유상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금(80%)
				계약시	(2021.07.12.)	입주지정일
중문	현관	슬라이딩 중문(1FIX+2DOOR)	59D2, 59E, 59J	1,650,000	165,000	1,320,000
			59C, 59H, 59I, 59L, 84A1, 84A2, 84B1, 84C1, 84D1, 84G, 84J1, 84J2, 84J3, 84M, 84P, 84T, 84V, 90D, 112A, 112B1, 112B2, 112C, 112P	1,760,000	176,000	1,408,000
		여닫이 중문(1FIX+1DOOR)	59A, 59F, 84F, 84U	1,980,000	198,000	1,584,000
수납장	주방	주방 수납장	전 주택형	1,540,000	154,000	1,232,000
불박이장	침실2	불박이장	59E	990,000	99,000	792,000
			59J	990,000	99,000	792,000
	59A, 59C, 59D2, 59I, 59L, 84M, 84V		1,100,000	110,000	880,000	
	90D		1,210,000	121,000	968,000	
	84A2, 84B1, 84C1, 84G, 84J1, 84J2, 84J3, 84P, 84U		1,320,000	132,000	1,056,000	
	84A1, 84D1		1,430,000	143,000	1,144,000	
	84T		1,540,000	154,000	1,232,000	
	84F		1,870,000	187,000	1,496,000	

■ 가전 유상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옵션품목	회사명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 금(80%)
-----	------	-----	----	------	----------	----------	----------

					계약시	(2021.07.12.)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빌트인냉장고	삼성	주방	6,160,000	616,000	616,000	4,928,000
		LG		6,710,000	671,000	671,000	5,368,000
	김치냉장고	삼성	주방	1,320,000	132,000	132,000	1,056,000
		LG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전기오븐	SK매직	일반형	440,000	44,000	44,000	352,000
			고급형	660,000	66,000	66,000	528,000
	하이브리드쿡탑	쿠첸	전기1+인덕션2	440,000	44,000	44,000	352,000
			인덕션3	660,000	66,000	66,000	528,000

- 일반 냉장고 수납장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냉장고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쿡탑 옵션 판매가격은 기본설치되는 가스쿡탑(3구) 설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옵션 선택시 기존 가스쿡탑(3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덕션 3구와 하이브리드쿡탑(전기1+인덕션2구)은 세대 전기의 사용량에 따라 누진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 쿡탑 옵션선택시에도 가스 배관은 일반세대와 동일하게 주방까지 시공되며, 가스밸브, 가스차단기, 캡 마감 처리됩니다.

■ 마감재 유상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7.12.)	입주지정일
엔지니어드스톤	주방 상판/벽체	59I	1,540,000	154,000	1,232,000
		59F, 84G, 84V	1,870,000	187,000	1,496,000
		59C, 59L, 84J1, 84J2	1,980,000	198,000	1,584,000
		59D2, 59H, 59J, 84A1, 84T	2,090,000	209,000	1,672,000
		84A2, 84J3	2,310,000	231,000	1,848,000
		59E	2,420,000	242,000	1,936,000
		84B1, 84M, 84P, 90D	2,530,000	253,000	2,024,000
		59A, 84C1	2,640,000	264,000	2,112,000
		84D1, 84F	2,750,000	275,000	2,200,000
		84U, 112B1, 112B2, 112C	2,860,000	286,000	2,288,000
		112A	2,970,000	297,000	2,376,000
		112P	3,300,000	330,000	2,640,000
		포세린타일	거실/주방/복도 바닥	59C, 59E, 59F, 59H, 59J	1,430,000
59A	1,540,000			154,000	1,232,000
59D2, 59I, 59L	1,650,000			165,000	1,320,000
84M	1,870,000			187,000	1,496,000
84B1, 84G, 84J1, 84V	1,980,000			198,000	1,584,000
84D1, 84F, 84J2, 84J3, 84T, 84U, 112C	2,090,000			209,000	1,672,000
84C1	2,200,000			220,000	1,760,000
84A1(테라스 선택), 84A2(테라스 선택)	2,310,000			231,000	1,848,000
84A1(알파공간 선택), 84A2(알파공간 선택)	2,530,000			253,000	2,024,000
84P, 90D, 112A	2,640,000			264,000	2,112,000
112B1, 112B2	2,750,000			275,000	2,200,000
112P	3,080,000			308,000	2,464,000
아트월타일 + 픽처레일	복도			90D	1,760,000
		112P	1,980,000	198,000	1,584,000
		84A1, 84A2, 112A	2,090,000	209,000	1,672,000
		84P, 112C	2,200,000	220,000	1,760,000
		112B1, 112B2	2,310,000	231,000	1,848,000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6-001-534212	아시아신탁주식회사

-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추후 별도 공지 예정)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발코니 입금계좌, 에어컨 입금계좌 등과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등)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상태는 선택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사항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디지털도어록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갈레반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천정	천장지(벽지류), 반자동림(몰딩), 우물천정 및 흡음판넬, 발코니천장도장	천장을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전자비데,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지 포함), 욕실환풍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및 자동식소화기,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주방매입/복도 등 제외)	주방매입/복도등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59A	59C	59D2	59E	59F	59H	59I	59J	59L	84A1
금액	21,943,987	21,936,828	21,858,539	21,974,109	21,835,441	21,972,437	20,961,663	20,702,775	22,165,294	30,541,464
타입	84A2	84B1	84C1	84D1	84F	84G	84J1	84J2	84J3	84M
금액	29,279,506	30,108,820	30,111,184	30,320,167	29,165,461	30,401,484	30,226,379	30,226,379	30,226,379	28,809,355
타입	84P	84T	84U	84V	90D	112A	112B1	112B2	112C	112P
금액	29,054,889	30,587,267	29,066,115	28,775,527	32,029,524	40,444,460	40,766,042	40,766,042	40,222,609	40,619,636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Ⅷ

기타

▣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하기 바람.(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분양사무소)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종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중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공동주택 부지면적	오피스텔 부지면적	근린생활시설 부지면적
면적(m ²)	30,898.0000	100,256.2323	7,555.3738	6,356.4922

- 상기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대지지분을 배분하였으며,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하기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②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세종시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③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가목, 나목에 따른 분양권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 :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5) 분양권 등을 중매나 그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6)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인이 되어있는 서류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당사자(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하여야 함(단,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2)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1.22.)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3)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자는 제외함)

■ 기타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예치하여야함.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 세대당 대지지분은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意的 것으로 간주함.
-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기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사업지구의 대지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입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은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 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삭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사이버 모델하우스,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사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어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모델하우스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 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 모델하우스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 및 홍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중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분양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사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분양 홍보물(CG)의 사업부지 외의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공원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은 형태, 층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개발주체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계획 및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주변의 “도로, 공원등”의 개설 시기가 분양자료(모형,CG등)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바랍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인근 문화공원이 조성 예정(2021년 12월 공원 조성계획안 확정 예정)이며 공원 조성은 택지조성 사업자 공사 범위로 시설계획인가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공원, 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개교 관련 안내사항

- (전·입학 관련)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안내사항은 세종시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320-2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임시배치) 6-3생활권 內 초등학교(초6-5) 및 중학교(중6-3) 설립계획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바, 확정 개교일이 부득이 입주개시일과 맞지 않을 경우 인근 생활권의 지정된 초·중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통학구역 확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통학구역'은 교육청에서 개교 전에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3생활권 산울유, 산울초, 산울중의 2024년 3월 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설립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교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산울초, 중 개교 이전 전입 시, 1생활권을 포함한 인근 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교 예정인 단지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접 동에 소음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는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보행자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사업대지 안쪽에 설치되어 대지경계가 조정되거나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대지면적이 축소 될 수도 있으며 별도의 금액의 정산은 없습니다.
- 당사업지 단지 출입구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접해 있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가감속차선을 지양하고 있고, 교통/경관/건축 위원회 심의에 미반영되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추가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는 회전교차로 설치되며 외부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통과차량에 교통의 흐름의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 BRT도로에서 오피스텔 동 사이 인근, 문화공원에서 606동 인근에 공개공지가 설치됩니다. 공개공지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지로 입주민들은 외부인인 출입을 막는 펜스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인근 동은 프라이버시와 소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의 디자인 계획(식재,레벨,시설물 등) 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의 주상복합 건물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상부 주동 입주민은 프라이버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단지를 지구단위계획상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동선이 지정되어 있고 공공보행동선을 중심으로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인근 동 입주민은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RT변 근린생활시설(상가) 아케이드와 BRT변 사이에는 지구단위계획상 테라스설치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 후 1층 상가가 테라스를 이용할 경우 소음 및 통행의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여건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 아파트는 세종시 공동주택 단지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설치되며, 입주시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붕형태는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콘크리트벽식(602동:기동식)으로 시공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놀이시설물, 조경시설물 등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품은 미술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마을명 싸인은 단지당 1개소 LED조명이 설치되는 양각 싸인이 설치됩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BRT도로 주변 교통량이 많아 인접동은 소음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7조3항의 의거 일반상업지역(당사업부지)에서 소음기준 법적의무 충족 제외됨)
- 당 사업지의 디자인 컨셉은 저층(7층) 클러스터형과 탑상형 주동이 어우러진 단지로 마주 보는 저층 세대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컨셉을 위해 불가피한 북향(북동/북서 포함) 세대가 있으며 그 세대는 영구음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는 주상복합 건물로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이용객 주차로 인해 단지 주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 601, 604동은 단지배치 구성상 불가피하게 층수가 낮아졌으며 그로 인해 일조율이 50%미만으로 확보되어 거주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에 관해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2층 차도는 택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유효높이 2.9m(주차면은 낮을 수 있음)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 3층은 유효높이 2.3m로 되어 있어 탑차 택배차량의 출입에 제한을 받습니다.
- 601동, 1층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606동 엘리베이터이용 및 도보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 601, 708, 710동 1층 근린생활시설, 2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동선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606동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3층 부터는 아파트가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2동은 디자인 타워동으로 특화디자인을 반영하여 유리 커튼월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빛 반사가 일어나 눈부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벽 저층부는 석재마감, 커튼월록, 석재쌓칠, 수성페인트가 주거동 형태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지게 시공되고, 필로티 일부 , 주동출입구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 석재쌓칠이 마감되나 면적은 동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문화공원(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설치되며, 입주민 등의 모임과 활동으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가 설치된 상부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등으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2동 35층에는 입주민이 이용 가능한 스카이라운지가 설치되어 아래 세대(34층)는 상부로 부터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BRT변과 남서측도로의 보도와 나란하게 전면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통행,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평지봉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소유로 단지 내 입주민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 2층에는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상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 1층 엘리베이터 홀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시선, 프라이버시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출입구는 별도로 설치되고, 필로티가 있는 주동은 필로티 하부로 출입구가 설치되어 1개층 필로티로 유효높이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 7층 클러스터형 지붕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며 아래층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층 옥상공간은 비상시 피난안전층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소음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각동 옥탑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이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 수량, 집열판 각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하부세대에는 조망침해, 미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료전지가 적용되어, 공용부 보조 열원으로 사용되며, 생산된 전기는 공용부 보조전력으로 사용됩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 청취 절차 등 포함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내부 시설물(가구 및 집기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제외)
- 지하주차장 환기탑(DA) 및 채광창, 쓰레기 집하시설인 클린넷(지상1층)과 재활용품 보관소(지하1, 2층), 자전거보관대(지상,지하층)는 본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양, 디자인, 수량, 위치는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일부동의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조망, 냄새 및 소음 등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필로티와 주동 지하층 등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설치됩니다.
- 탑상형 주동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디자인(배면부의 디자인을 전면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특화를 위해 내부에 코어가 만들어진 형태로 별도 환기 및 채광창이 설치되지 있지 않고 기계식 환기장치로 환기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기 시설에 탈취기가 설치되나, 일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탈취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됩니다.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PIT층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바닥,천장,벽에는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영향으로 누수와 물고임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2, 3층 천장에는 방수가 설치되지 않는 층으로 강설시 차량으로 이동되어 온 눈의 영향으로 물떨어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차량 주차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점검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옥외 운동시설, 파고라, 휴게의자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등의 일부세대는 소음, 음식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 단지의 율타리는 세종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 설치되지 않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생활타리 등이 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각 동 지하2층에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세종시 소방차 정차공간 12x6m, 소방차 활동공간 15x11m 필요함),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넷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로 주민공동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각 동 출입구 경사로, 단지외부 엘리베이터 등이 계획됩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피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결로 방지를 위해 제습기가 설치되며,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단지 내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음.)
- 601동 지하에는 기계실/전기실이 설치되며,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동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어 가동시 비산, 소음 등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DA)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하니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 동 지하주차장 급, 배기구(DA)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용 난방열량계와 급수, 급탕 계량기는 엘리베이터홀 PD 내부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공용부에는 냉방은 에어컨(냉방전용)이 설치되고, 난방은 지역열원을 사용하는 웬코일유니트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 단지내 전기공급용 개폐기(PAD S/W)가 설치 될 수 있으므로 미관저해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605동)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본공사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옥상(604동, 605동) 및 지하주차장 환풍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지내 전파상태에 따라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 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업무영역이며, 시공사와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발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매연, 소음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여건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기준층 천장고는 2.4m이고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1~7층은 2.4m천장고, 8~34층의 천장고는 2.6m입니다.
- 기존 세대는 PL입면분할이중창(외부투시형 난간 없이 안전유리 적용)이며,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유리커튼월(AL이면로이삼중유리단창)을 적용하였으나 602동 1~7층 일부세대는 PL입면분할이중창을 적용하였으므로 해당세대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유리커튼월(AL이면로이삼중유리단창)을 적용하였으나 입면디자인 특화를 위해 돌출 장식물이 설치된 세대는 창호의 개구 폭과 높이가 축소되니 해당세대를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세대: 602동1호라인 2~15층와 25~32층, 3호라인 9~14층) 또한 돌출장식물로 인해 채광, 조망, 물고임, 고드름 맺침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유리커튼월(AL이면로이삼중유리단창)을 적용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창문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유리커튼월(AL이면로이삼중유리단창)을 적용하여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PL창호의 외부 색상은 모델하우스와 설치된 샘플과 색상은 동일하나 성형 형태에 따른 질감의 차이(외부 굴곡이 저 있음)가 있습니다.
- 오피스텔 창호는 단창이 설치되어 입주민의 생활방식에 따라 창문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환기를 자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층형 세대 거실 상부창은 높이가 높아 수동으로 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동 장애인승강기(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따라 바닥면적(공급면적)에 제외되어 산정되었습니다.
- 59타입 침실1 발코니 천장은 마감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부세대의 바닥드레인 배관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59타입 복층형 세대의 내부 계단은 대형 물건을 나르기에 협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짐 사다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전용면적의 단위세대라도 층수, 동수, 형태, 타입에 따라 구조, 주방가구 길이, 드레스룸 크기, 발코니면적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의 천장고가 2.6m이지만 세대의 침실문 등 실내도어 높이는 2.4m입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은 기둥과 유리커튼월, 내부 경량벽체로 적용된 디자인 특화동으로 침실에서 기둥이 돌출 되어 가구 배치등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답상형 주동 입면특화 디자인의 적용으로 거실창이 넓은 통창이 아닌 분할된 2개의 창으로 설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벽체(PIT층 포함)의 임의적인 구조변경, 확장은 불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 합니다.
- 601, 604동 일부, 복층형 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진입은 3, 5층에서 출입이 가능한 편복도형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복층형 세대의 내부계단은 대형 가구 및 가전이 이동하기에 협소할 수 있으므로 층간 이동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604동 34층에는 펜트하우스가 설치되며, 펜트하우스의 옥상 전용테라스 공간이 설치되며, 나머지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옥상은 화재 등 비상시 입주민이 일시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그로 인해 해당 펜트하우스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 공간에는 입주민 개인을 위한 창호 설치 등 별도의 구조변경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세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최상층 펜트하우스 세대 테라스 바닥 마감은 무근콘크리트로 설치 되며 테라스 우수는 인근 우수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불빠짐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바닥 타일 유상윤선 선택시 줄눈사이에는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루 선택시와 다르게 아래층 층간소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층형세대 내부계단의 재질, 형태, 폭, 계단수 등은 본시공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화재에 대비 할 수 있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인접세대와 접해 있는 세대(해당세대)는 하향식피난구는 설치되지 않고 파괴하기 쉬운 경량벽체로 설치됩니다.그로 인해 상하세대, 측세대로 부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화재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 설치, 천정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타입의 전열교환기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턱 높이는 돌출입면 디자인상 골조 턱높이가 기준층 보다 높게 설치되어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뒤편은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음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 중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는 다용도실이 있는 타입은 세탁기, 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습도가 높아져 결로, 곰팡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여 합니다.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높아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사용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합니다.
- 59타입 복층세대의 욕실은 오배수 배관 시스템 층상배관으로 적용 됩니다.
- 단위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강마루 및 벽타일 등은 실제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기준층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기준과 상이합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단열문이 설치되나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세탁, 손빨래, 물뿌리기)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발코니(오픈테라스 포함)는 건식개념으로 바닥배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 입상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제품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텐드형)과 침실(벽걸이형)에 매립 설치되며, 가족실, 알파공간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설치)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매립배관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전원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매립배관 및 전기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설치 에어컨은 실외기실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 에어컨 유상옵션 중 거실에 2개가 설치되는 타입은 평면 특성성 복도가 길거나 실이 먼 타입의 경우 멀리까지 냉기가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발코니 혹은 보조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아파트 가스계량기에는 계량기와 별도로 가스누출확인밸브가 설치됩니다.
- 602동 디자인타워동 주방 배기는 공용 루프팬 배기 방식으로 옥탑에 배기철펀이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외부에 캡이 노출되며, 저기압인 날의 경우 냄새가 머물러 주변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와 인접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타입은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건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건본주택용이며, 본공사시는 소방 법규에 맞춰 설치됨.)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일부 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상부에는 렌지후드 배기 덕트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의 운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은 녹색인증 현장으로 물절약정책의 일환으로 세대 수압을 2.5kg/cm2 으로 제한되므로 수압이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양변기는 관련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넷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실, 다용도실등 문 뒤벽, 현관벽, 복층세대 계단참등 노출된 부위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SKT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합니다.
- 음성제어기능은 SKT의 AI스피커(Nugu)에 한해서만 연동됩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세대 내 Wifi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체감지기가 설치 됩니다. (아파트1~2층 및 최상층의 경우는 발코니 및 거실등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 아일랜드식탁에 설치되는 매립형콘센트는 아일랜드식탁 이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팬트하우스 세대 테라스에는 공용통기관 및 환기구 등이 노출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X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1항에 따른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3항에 따른 단열재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4항에 따른 방습층 설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변압기로 정한 제품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 적용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를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1개 이상 설치 및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BL 주상복합 건축주: 금호산업(주) 준공(예정)일: 2023.12.3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산동동 6-3생활권 H3블록 층수: 지상35층, 지하3층 면적: 100,352.0645㎡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휴먼커리어빌 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20-477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2020.12.29. - 사용승인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2020.04.30.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8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원광주공공정책(2020.04.30))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BL 주상복합
 2. 신축일: 2020.12.29
 3. 대지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산동동 6-3생활권 68호지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등급
1. 열환경성 적정성	★★★★	—
2. 열환경성 적정성	★★★★	—
3. 세대 외 경계벽의 차음성	★★★★	★
4. 공동주택의 실내외 온도차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5. 차음성 관련 소음도	★★★★	—

나. 부속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유해물질의 함유량	★
4. 유해물질의 함유량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내외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치밀개발 지양	—
3. 환경친화적 건축재료	—
4. 활동성 건강망치 대역의 적용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7. 실내 쾌적(에너지 효율)	—
8. 에너지 효율성 관련 지표의 적용	★★
9.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특종물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상인 제로에너지의 사용	★★
11. 차량소 차폐의 사용	★★★
12. 친환경 건축재료 사용	★★
13. 주택용돌출 지붕의 사용	★★
14. 녹색건축시공의 적용률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 이용	—
17. 빗물 및 우수저장시설 이용	★★★★
18. 동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피난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시)」(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BL 주상복합 인증번호: 20204770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산동동 603-4 층수: 지상35층 / 지하3층 면적: 114022.6682(㎡) 건축물의 유형: 공동주택 설계자: (주)휴먼커리어빌 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0-1-1-1-1-0249 평가자: 한국부동산원 인증기준: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
냉방	0.0	0.0	0.0	0.0
냉방	49.7	65.0	49.4	10.8
냉방	30.7	39.8	29.8	6.7
냉방	10.4	6.8	24.9	4.1
냉방	2.7	2.7	7.5	1.3
합계	30.8	71.6	71.0	22.9

본 예비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예비인증서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한국부동산원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등급 기준	AAA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목	1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4페어 이상	침입감지기	
	2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간 16C 이상	차량통제기	
	3	블로킹필터	무인택배시스템	
	4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육실폰(오피스텔 제외)	
	5	통신배관실(TPS)	주방TV(오피스텔 제외)	
	6	단지 서버실(MDF)	일팔소등 제어	
	7	폐쇄회로 TV장비(CCTV)	디지털 도어락	
	8	가스밸브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9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10	난방 제어기	대기전력차단장치	
	11	현관방범 감지기	환기장치 제어	
	12	주동현관 통제기		
	13	원격감침 전송장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 고
건 축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소	2,649,101,235	
전 기	(주)세종기술단	508,104,000	
소 방	(주)나우기술단	576,400,000	
정보 통신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사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VAT 포함]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3,113,280,000	공 사 비	건 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 사 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791,237,970			
	기간이자	523,697,010			용접공사		9,409,925	기계 설비	난방설비공사	4,698,052,847	
	필요적 경비	3,544,900,455			조적공사		1,693,692,800		가스설비공사	383,836,482	
	그 밖의 비용(흙막이공사)	12,957,728,910			미장공사		3,951,950,570		자동제어설비공사	421,377,186	
	계	70,139,606,375			단열공사		3,763,761,545		특수설비공사	3,087,241,109	
		방수·방습공사			3,199,197,629		공조설비공사		-		
공 사 비	토목	토공사			2,276,468,897		목공사	5,927,925,328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7,277,870,982
		흙막이공사비			-		가구공사	2,728,727,699		정보통신공사	4,625,026,141
		비탈면보호공사			151,764,663		금속공사	3,951,950,570		소방설비공사	6,908,090,937
		옹벽공사			227,646,468		지붕 및 흙통공사	282,281,958		승강기공사	3,542,944,776
		석축공사		227,646,468	창호공사	6,774,771,202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5,380,057,052	
		우수·오수공사		682,940,458	유리공사	1,693,692,800		이윤	1,449,351,745		
		공동구 공사		151,764,663	타일공사	3,011,009,657		계	150,626,362,55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79,411,132	돌공사	2,822,821,685	간 접 비	설계비	2,874,494,000		
		도로포장공사		1,138,234,449	도장공사	2,634,633,713		감리비	3,427,122,9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75,881,805	도배공사	752,751,888		일반분양시설 경비	5,441,316,990		
		정화조시설공사		303,529,327	수장공사	4,704,702,458		분담금 및 부담금	2,837,954,133		
		조경공사		3,794,114,477	주방용구공사	2,258,256,716		보상비	-		
		부대시설공사		834,705,122	그 밖의 공사(잡공사)	376,375,944		기타 사업비성 경비	11,166,343,051		
		공통가설공사		1,223,222,871	급수설비공사	2,168,676,546		계	25,747,231,074		
		가시설물공사	3,951,950,570	급탕설비공사	1,841,534,468	그 밖의 비용		35,170,026,135			
지정 및 기초공사	1,505,504,829	오수·배수설비공사	2,712,905,123	합 계	246,513,200,000						
철골공사	47,047,52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1-101-0000200호	₩197,210,56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장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2장 보증채무의 청구와 이행절차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제5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2. 분양계약서
3.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4. 감리자발행공정확인서(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사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5.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시공자·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 등(이하 “시공자 등”이라 함)이 계속사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등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사가 결정할 때까지 그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등이 주택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2.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그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공사의 최고통지서를 받은 보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3분의 2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발급된 하나 이상의 보증은 하나의 보증으로 보아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문화재 발견·토지매설 등의 사유로 정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

⑤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월(단, 주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⑥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환급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보증채권자는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공사는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환급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며, 보증채권자가 제5조 및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제2조 제1항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보증채무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해당 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보증채권자는 제2조 제2항의 잔여입주금 등을 공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⑨분양이행의 경우 공사는 원래의 입주예정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새로 입주금의 납부기일과 입주예정일 및 잔여입주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보증채권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원래의 입주예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보증사고일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알립니다.

1. 제5항의 보증채무 이행방법 결정시까지의 기간
2. 실행공정률을 예정공정률에 도달시키기 위한 예정공정표상의 필요한 공정기간

⑩공사는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협의당사자로 합니다.

【계속사업】 보증사고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공사를 마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주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7조 (분양이행시 지체배상금 및 연체료의 적용)

①공사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알린 입주예정일에 입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그 초과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지체배상금률(지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지체배상금률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부담합니다.<개정 2019. 7.25>

②분양이행시 보증채권자가 납부해야 할 잔여입주금에 대한 연체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난 입주금 : 납부지연일수에서 입주지연기간(원래의 입주예정일로부터 분양이행시 새로 알린 입주예정일까지의 일수)을 뺀 기간에 원래 주택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증사고 당시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입주금 : 제6조 제9항에서 공사가 알린 입주금납부기일에 입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일수에 원래 분양계약서의 연체료율(연체기간별로 상이한 경우에는 최소 연체료율을 말함)과 공사 내규의 연체료를 중 낮은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개정 2019. 7.25>

제8조 (대위 및 구상)

①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공사는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로서 공사가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채무자인 주채무자 등에게 권리를 행사함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장 보증채무의 성립과 효력

제9조 (보증채무의 성립)

공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때(상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때를 말함)에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제10조 (보증의 실효)

보증서 발급 이후에 보증서에 적힌 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보증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업주체의 변경
2.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1조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보증채무의 이행장소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로 합니다.

제12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보증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단, 공사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공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릅니다.

제13조 (약관의 해석)

①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증채권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사는 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등 보증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사는 이 보증의 유지, 관리, 보증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서개정 2019. 7.25.>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신용)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개정 2019. 7.25.>
- ② 공사는 보증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정 2019. 7.25.>※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아시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시행사	금호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110111-0134877	전라남도-주택2006-004
	신동아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보정동,하이프라자)	110111-0222218	경기도-주대2003-026
	(주)에이치엠지파트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7층(논현동,동양애니메이션빌딩)	110111-5586750	서울-주택2015-0370
시공사	신동아건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보정동,하이프라자)	110111-0222218	경기도-주대2003-026

▣ 홈페이지 : <http://www.sejongkhapt.com>

▣ 견본주택(분양홍보관) 및 현장 위치 안내

견본주택	현장
 <p>[견본주택]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p>	 <p>[현장] 세종특별자치시 6-3생활권 H2·H3블록</p>
<p>■ 위치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모델하우스촌 내 견본주택(분양사무소)]</p> <p>■ 운영기간 : 2021.01.27.(수) ~ 분양 종료 시</p> <p>※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사전예약제로 운영중이나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방문하실 경우 관람까지 장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p> <p>※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서류접수 기간 후 상황에 따라 지정계약 전일까지 견본주택(분양사무소) 휴관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 운영시간 : 10:00~17:00</p> <p>※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분양홍보관)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분양홍보관)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위치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림 6303-2번지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3BL, H3BL)</p>
<p>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PC, 모바일)</p>	<p>분양문의</p>
<p>■ 주 소 : http://www.sejongkhapt.com</p>	<p>■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 044-862-1567 (10:00 ~ 17:00)</p>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